

교복공급계약해지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21가합○○○○○ [1심]	사건유형	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
원고	○○○	피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[1심]2021. 12. 21. 원고패	비고	
사건개요	<p>○ 원고는 ‘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’이라는 상호로 교복, 작업복의 제작·공급을 하는 사람이고, □□중, △△중, □□중은 원고와 개별적으로 교복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.</p> <p>○ □□중, △△중, □□중은 원고가 입찰 당시 품질인증(Q-Mark)업체지정서 및 시험성적서를 각 위조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와의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였음. 원고는 이후 각 학교별 사항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고, 각 학교들은 서울보증보험에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음.</p> <p>○ 원고가 이 사건 서류를 위·변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해당될 뿐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.</p>		
주 문	<p>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</p> <p>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</p>		
판결이유	<p>○ 원고가 이 사건 서류를 위·변조한 다음 피고에 제출하여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것은 지방계약법 등에서 정한 필요적 해제 사유인 ‘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는 경우’에 해당함.</p> <p>○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,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.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</p>		